

의안번호	2219263
의 퇴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6. 6. 22.
추계번호	26F286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대한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‘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’) 해산시 잔여재산 중 설립자 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했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경우, 취득세는 2027년 4.1억원, 2031년 3.5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9.0억원(연평균 3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취득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(안 제22조의5 신설)	-4.1	-3.9	-3.8	-3.7	-3.5	-19.0	-3.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5 (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 법인 해산에 대한 감면)	○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시 설립자 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했던 재산(부동산)을 귀속받는 경우,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 - 특례대상자: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 등 - 특례대상 재산: 설립자 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하거나, 출연한 금전 등을 바탕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등 - 감면율: 85% ※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개정안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, 85%의 감면율 적용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2조의5 (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6년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7년부터 적용되며, 향후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당해연도에 발생한다고 가정
 - 취득세는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함에 따라 법인 해산과 취득세 감면이 다른 해에 발생할 수 있으나, 동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른 감면대상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추이와 법인의 잔여재산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 어린이집 수의 연평균 감소율 추이에 따라 해산하여 감소한다고 가정
 - －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평균 1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 어린이집 수의 감소추이에 따라 법인 수도 감소한다고 가정
 - －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최근 3년(2023~2025년)간 연평균 3.6% 감소
 - 향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규모는 교육부에서 제출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서 보조금 및 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가정
 - －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해산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에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금액을 반환해야함
 - －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전액 부동산으로 가정하며, 해산시 보조금 및 부채를 차감한 부동산은 전액 설립자 등의 출연으로 형성되었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현황

□ (제도개요)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중 설립자 등이 출연하였던 부동산을 귀속받는 경우, 부동산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

○ 2025년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라 2026년 5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경우,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설립자 등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음

－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해산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 따라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함

－ 2025년 11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3조의3이 신설되어,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한하여 해산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허용(시행일자: 2026.5.12.)

○ 개정안은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시 해당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설립자 등이 이를 귀속받는 경우,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취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－ 특례대상자: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 등

－ 감면대상 재산: 설립자 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하거나, 출연한 금전 등을 바탕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등

① 설립자 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토지 및 건축물

② 설립자 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한 금전 등의 재산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

③ ①과 ②를 바탕으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

－ 감면율: 85%

※ 취득세의 경우,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개정안의 면제조항에도 불구하고, 85%의 감면율만 적용

□ (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현황)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11월 기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수 및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
○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수는 1,025개,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는 1,032개로 1법인당 평균 1개의 어린이집 운영

- 해당 법인 1개당 기본재산은 평균 5.3억원으로, 기본재산에 사용된 보조금 및 부채를 차감한 재산은 평균 4.0억원 수준

[표 2]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재산 현황: 2024.11. 기준

(단위: 억원)

구 분	총액			평균			
	기본재산 (A)	보조금 ¹⁾ (B)	부채 (C)	기본재산 (D=A/1,025)	보조금 (E=A/1,025)	부채 (F=A/1,025)	잔여재산 (D-E-F)
전국 기준	54,017	12,653	404	5.3	1.2	0.04	4.0

주: 1) 기본재산 조성(신·증축)에 사용된 보조금 총액

자료: 교육부 제출 자료

(2) 추계방법

- (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 추이) 최근 3년(2023~2025년)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수는 연평균 3.6%씩 감소하는 추세

-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23년 1,206개에서 2025년 1,120개로 연평균 3.6%씩 감소

[표 3]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추이: 2022~2025년

(단위: 개, %)

구 분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감율
어린이집 수	1,206 (△3.8)	1,171 (△2.9)	1,120 (△4.4)	△3.6

주: 1. 해당 통계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외의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된 수치임

2. ()안은 전년 대비 어린이집 수 증감율

자료: 교육부,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, 각 연도

- (향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추이 추계) 향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감소세에 따라 법인이 해산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수는 2024년말 1,025개에서 2025년 4.4%, 2026년 이후 연평균 3.6%씩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4]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수 및 해산 추이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개, %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수	910	877	846	815	785
해산법인 수	34	33	32	31	30

□ (향후 1법인당 세수효과 추계) 향후 해산법인의 평균 잔여재산(부동산)은 2024년 기준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(보조금 및 부채 제외) 평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취득세율 및 개정안의 감면율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향후 해산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보조금, 부채 등을 제외하고 1법인당 평균 4.0억원의 잔여재산(부동산)을 남긴다고 가정
-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 취득세율,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등을 고려하여 1법인에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효과는 0.12억원 수준으로 추계

$$- 0.12\text{억원} = 4.0\text{억원} \times \text{취득세율}(3.5\%) \times \text{감면율}(85\%)$$

※ 부동산 무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: 비영리사업자 2.8%, 그 외 3.5%

□ (향후 전체 세수효과 추계) 향후 해산법인 수 및 1법인당 세수효과 추계치를 반영하여 전체 세수 감소효과 추계

- 전체 세수 감소효과는 1법인당 세수 감소효과(추계치)에 연도별 해산법인 수(추계치)를 곱하여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, 개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
1법인당 세수 감소효과(A)	0.12	0.12	0.12	0.12	0.12
해산법인 수(B)	34	33	32	31	30
전체 세수 감소효과(A×B)	4.1	3.9	3.8	3.7	3.5

(3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중 설립자 등이 해당 법인에 출연했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경우, 취득세는 2027년 4.1억원, 2031년 3.5억원 등 2027년에서 2031

년까지 5년간 총 19.0억원(연평균 3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취득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(안 제22조의5 신설)	-4.1	-3.9	-3.8	-3.7	-3.5	-19.0	-3.8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